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김용호 의원)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786호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

보고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만 65세 고령자의 축구장 이용료 감면을 통해 고령자의

건강 증진과 공공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

것으로,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.

다만, 축구장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,

특정 연령층에 대한 감면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,

공원 내 체육시설 중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높은 편이어서,
감면 적용 시 일정 수준의 수입 감소도 발생할 수
있습니다.

또한, 주로 단체로 이용되는 시설 특성상,
감면 대상자 식별과 적용 과정에서 현장 운영에 혼선이
생길 수 있어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